

# 외국인 유학생(D-2)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3.1.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유학생 단체보험 가입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단, 2020-2학기 학교 단체보험 가입자는 2021-1학기까지 해당 보험의 효력이 유지됨)

## 1. 보험혜택 :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

- (본인일부부담)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음
- (건강검진혜택) 일반검진 및 암검진 혜택 제공
- (이용의 편리성)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
- (병원 접근용이) 국내 설립된 대부분의 의원, 병원, 약국 등 이용가능
  - ※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는 30~60%를 본인이 부담(나머지는 공단에서 지불).
  - 단,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2. 가입방법 : 자동으로 가입

-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 합니다.
  - ※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①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의 경우 재외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경감 가능
    - ③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3. 가입시기 : 2021. 3. 1.(월)

- **유학(D-2) 외국인등록일을 기준으로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이미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21. 3. 1(월)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 출국 후 **재입국 한 경우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 **최초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외국인등록일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기간에 건강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4. 보험료 : 외국인 월 보험료의 30%(2021년), 40%(2022년), 50%(2023년부터)

- 외국인 유학생의 월 보험료는 경감률이 적용되어 외국인 월 보험료의 50%이며, 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외국인 월 보험료	외국인 유학생 월 보험료			비고
	2021년(30%)	2022년(40%)	2023년부터(50%)	
131,790원	39,540원	52,720원	65,890원	

### ※ 보험료 경감 제외 대상 안내

- 연간 소득이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과표 13,500만원 초과한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월 보험료 131,79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납부 : 가상계좌, 자동이체(계좌·카드),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등
-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한 체류지(주소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발행됩니다.
  - **보험료는 익월 보험료를 선납하며, 매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예시1 참조)**
  - 건강보험 가입일이 매달 1일인 경우 해당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외에는 그 다음달 보험료부터 부과됩니다.(예시2 참조)
  - 1개월 이상 해외 출국 시 해당기간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1개월 미만은 보험료 발생)
  - ※ 예시1 : 4월 보험료는 3월 25일까지 납부, 5월 보험료는 4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 예시2 : 건강보험 가입일이 3월 5일인 경우, 3월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4월분부터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혜택은 3월 5일(건강보험 가입일)부터 이용 가능함

6. 시행일(2021.3.1.)에 취득되는 유학생 보험료 납부 안내
- 시행일(2021.3.1.)에 취득되는 신규가입자는 3월과 4월 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되며, 유학생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보험료를 10회 분할하여 납부합니다.(납부기한: 2021.3.25.)
  - 3월 보험료 : 39,540원 => (10회 분할) 3,950원 x 10개월
  - 4월 보험료 : 39,540원
  - **납부할 금액** : 39,540원(4월 보험료) + 3,950원(1회 분할분) = **43,490원**

7.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 보험급여 제한 및 비자 연장에 불이익 발생
-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5%의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되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허가 인정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됩니다.**(최대 3회, 그 외 체류허가 불가)
  -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체납월수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8. 외국인 민원센터 안내
- 전화상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 033-811-2000
  - 방문상담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서울센터	서울 전역	서울 구로구 새말로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안산센터	안산,시흥,군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4층
수원센터	수원,용인,화성,오산,성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센터	인천,부천,김포,광명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의정부센터	의정부,남양주,가평,포천,동두천,연천,양주,구리,고양,파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